

# 불법·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의안 번호	2530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6월 22일

제안자 : 도시안전건설위원장

## 1. 주문

-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불법·불공정하도급을 비롯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의 법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불법·불공정하도급 근절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「건설산업기본법」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49조제1항에서 보고, 조사 및 검사의 대상을 제한한 단서<sup>1)</sup>를 삭제하며,
- 이에 대한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사법경찰직무법’이라 한다)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지명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촉구·건의함.

## 2. 제안이유

-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으며 불법·불공정 다단계 재하도급 및 품매기 관행이 횡행하고 있어 각종 안전

1) 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

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- 건설공사의 불법·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(국토관리청장)과 행정처분 권한(지방자치단체장)이 이원화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,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도 불법·불공정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담보를 도모하고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제한한 단서를 삭제하고 「사법경찰직무법」에서 담당공무원의 지명 및 직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
- 나. 기타사항 : 없음

### 4. 이송처

- 가. 국회 : 법제사법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
- 나. 정부 : 법무부, 국토교통부

### 5. 첨부 : 불법·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## 불법·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

-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건축물 철거와 석면해체 공사의 불법 재하도급이 지적된 바 있으며, 이 같은 불법·불공정하도급 관행이 횡행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- 공사를 수주한 회사가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에서 명의대여 수수료가 차감되고, 차감된 공사비로 불법 재하도급 업체에서 수행하는 공사는 시설물 안전뿐만 아니라 공사장 안전관리에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.
- 이 같은 불법·불공정 재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은 국토관리청장에게 있고,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이원화로 인해 그 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 사료됩니다.
- 실제로 서울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속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으며, 불법·불공정행위 관련해 제기된 민원에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어 행정기관의 실효성 있는 조사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.

- 이에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이 법 제9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위임사무로만 제한하고 있는 단서 규정인 “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”를 삭제하고,
-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사법경찰직무법’) 제5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근무하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에 따라 건설공사 감독·감시·조사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을 포함시키는 한편,
-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규정된 범죄까지 감독·감시·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「사법경찰직무법」 제6조에 따른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해 줄 것을 촉구·건의하는 바입니다.

2021. 6. 22.

##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

[붙임 1]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[붙임 2]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

[붙임 1]

##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일부개정법률안

현          행	개          정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9조(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)  <u>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           단체의 장(제91조제1항에 따라           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           여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.           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등록기준            에의 적합 여부, 하도급의 적정성,           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        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          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,            재무관리 상태, 시공 상황 등에 관            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, 소속 공            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            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의 경            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           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           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② ~ ⑦ (생략)</p>	<p>제49조(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)            ① ----- <u>지방자치            단체의 장은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[붙임 2]

##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~ 53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5조(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4.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,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근무하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9조에 따른 건설공사 감독·감시·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</u></p>
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제4조  
와 제5조에 따라 사 범경찰관리의  
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 
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 
범죄로 한정한다.

1. ~ 50. (생략)

<신설>

제6조(직무범위와 수사 관할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50. (현행과 같음)

51. 제5조제54호에 규정된 사람  
의 경우에는 소속 관할 구역에  
서 발생하는 「건설산업기본  
법」에서 규정된 범죄